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70호

2021.4.19.(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1174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	---

◆ **공 고**

제2021-1158호 서울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결과 공고	4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1-1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74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임용권한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전보 임용권 행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자료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승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마. 직위해제 및 중징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료 및 절차 진행 요구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바.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 사.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협의 권한 및 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 자.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제출 권한 및 필요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차.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인 추천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카.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5, FAX: 02-2133-0822, E-mail: mhsong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58호

서울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결과 공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 지정기관 : 총 8개소

기관명	법인명(대표자)	소재지	진료과목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소아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외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 소아이비인후과 등 15과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8센터 24과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25과
경찰병원	경찰병원 (서울경찰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23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등 35과
중앙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감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치과보철과 등 30과
서울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 20과
이대서울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명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등 26과

□ 전담의료기관 주요역할

-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검사 및 검진 등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6)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1-1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성차별, 성폭력 없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 및 실질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전망 제시, 평가·환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의 평가·환류를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의2조)
- 다. 성평등위원회 자문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수정(안 제6조)
- 라. 성 주류화 조치 조항 신설(안 제8조의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담당부서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주 소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6973-9822, FAX 02-399-9754
 - 이메일 : bettertogether@sen.go.kr

4. 개정 조례안 : 붙임

현 행	개 정 안
<p>8.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p> <p>9.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성평등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u>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생 략)</p> <p>3. <u>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u>위원회가 정하는</u> 사항</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용 방 안</p> <p><삭 제></p> <p>5.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u>교육감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제5조의2(실태조사 실시) 교육감은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u></p> <p>제6조(성평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구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u>----- ----- --</p> <p>4. ----- <u>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p> <p><u>제8조의2(성 주류화 조치 등) ① 교육감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u></p>

현 행	개 정 안
	<p>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 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p> <p>③ 교육감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p>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1년 월 일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